

전기법 제21조의 4 관련 건설공사 부실벌점제도

1. 도입배경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건설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95.1.5 건설기술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건설공사 부실벌점제도가

도입되어 '96.9.1 부터 현장에서 건설기술관리
법령에 의하여 처분되는 중대한 과실외에 경미
한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설업체,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
을 측정하는 제도로 발주청은 입찰참가 또는 적
격심사, PQ심사시 부실벌점 측정결과를 적용하
고 있다.

부실벌점 관리도

부실벌점 측정 (발주 및 인허가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대상 : 50억원 이상 건 설공사 - 측정일시 : 매반기말까지 측정(예12/31, 6/30)
부실벌점 총괄 통보 (발주기관→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일시 : 매반기말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부실벌 점 총괄표 통보 (예1/15, 7/15)
부실벌점 처리현황 제출 (협회→건교부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관리 : 부실벌점 누계 관리 - 제출일시 : 매반기말의 다 음달 말일까지 처리현황 제출(예 : 1/31, 7/31)
부실벌점 측정결과 적용 (협회→발주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일시 : 매반기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간 적용 (예 : 3/1, 9/1)

2. 부실측정 및 부실벌점 관리적용

1) 부실측정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바닥면적합계 1만제곱미터 이
상인 건축공사, 기타 건교부장관, 발주청과 행
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사를 대상
으로 건교부장관이나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인·허가, 승인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건설업
자,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건설기술자를 대상으
로 측정하여 주요 부실사례에 따라 1등급(5~6점),
2등급(3~4점), 3등급(1~2점)의 부실벌점을 부
과한다.

* 이 자료는 월간 <건설>지('97.8월호, 대한건설협회)에 게재되었던 내용입니다.
* 내용중 '협회'는 '대한건설협회'입니다

2) 부실벌점관리

부실벌점 종합관리업무는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장이 측정한 부실벌점 총괄내역을 건설업자는 대한건설협회,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에 통보하여 해당 협회에서 관리하며, 부실벌점은 ①최신공법 및 관리기법 적용 및 매몰부위 기록관리 철저 등 ②시공능력평가 90점 이상 및 우수건설업자 ③업무관련 발주기관 표창시 발주청별 집계한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 적용하며,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최종 집계한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한다.

3) 부실벌점 적용

발주청에서는 협회자료를 받아 건설업자의 경우 부실벌점이 20점 이상이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라 1월 이상 2년 이하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시공능력평가지수인도 평가액에 부실벌점이 건교부장관이 고시한 점수 이상이면 건설공사 실적에서 감액하고, PQ 또는 적격심사시 감점하는 불이익 처분을 하고 있다.

3. 주요 개정내용

- ① 부실벌점 경감점수가 과다하기 때문에 동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부실벌점 경감점수를 대폭 낮춤
 - 우수시공업체 및 발주기관 표창을 받은 업체 등에 부여하는 부실벌점 점수를 종전 15~30점에서 최고 5점으로 경감
 - 발주기관 표창 등에 대하여는 관련협회에서 최종 집계한 평균부실벌점에서 관련점

수를 경감, 그 효과가 컸으나 앞으로는 발주기관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

- ② 공동도급공사의 부실벌점 부과대상자 판단기준이 모호한 점을 개선하여 앞으로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도급 대표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되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분담금액이 50억원 이상인 해당업체에 대한 벌점부과토록 신설
- ③ 부실벌점과 부실점수로 이원화돼 있어 적용상 애로가 있는 것을 개선하여 부실벌점으로 일원화하고 관리대장을 총괄표로 흡수하고 총괄표에는 면허번호와 벌점내역을 추가
- ④ 측정기관의 장은 부실측정시 벌점부과 내역과 부실벌점 측정기준 및 경감기준을 대상자에게 통지토록 신설
- ⑤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한 부실벌점의 등급별 점수 하향조정
 - 1급 : 종전 8-10점 → 5-6점, 2급 : 종전 4-7점 → 3-4점, 3급 : 종전 1-3점 → 1-2점

□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 관리기준 (제13조의 6 관련)

1. 용어의 정의

가. “부실벌점”이라 함은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감리전문회사 및 설계 등 용역업자(이하 “업체”라 한다)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설계 등 용역참여 기술자를 포함한다) 및 감리원(이하 “건설기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이 사례별·등급별로 점수화한 것을 말한다.

나. “위반등급”이라 함은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1급·2급 및 3급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다. “경감점수”라 함은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 등이 받은 부실벌점에서 경감하도록 한 점수를 말한다.

2. 부실벌점의 적용대상

가. 관계법령에서 건설공사의 부실과 관련하여 제재를 받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며, 제5호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서 정한 부실내용과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 및 영업정지
- ②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 ③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 ④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 ⑤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 ⑥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 ⑦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 ⑧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에 의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 ⑨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나. “가”의 제재규정상의 내용과 제5호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서 정한 부실사례가 유사한 경우에는 이를 부실벌점으로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실벌점의 산정방법

가. 측정기관은 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의 부실측정기준에서 정한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1

급·2급 및 3급으로 구분하여 해당벌점을 부과한다.

나. 당해 반기에 동일업체의 2건 이상 공사 또는 용역을 점검한 경우에는 이를 평균한 부실벌점을 당해업체 또는 건설기술자 등의 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이 경우 1995년 10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이를 1반기로 본다.

다. 누계평균부실벌점은 당해업체 또는 건설기술자 등의 최근 3년간의 평균부실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라. 부실벌점경감기준의 적용은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점수를 당해현장 또는 평균부실벌점에 대하여 적용한다.

마. 점검시 지적내용과 부실사례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사한 부실사례의 벌점을 준용하여 부과한다.

바.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세부부실측정기준을 마련하여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부실벌점산정에 참고하게 할 수 있다.

사. 관련 건설기술자 등의 경우 책임기술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4. 부실벌점의 관리 및 적용

가. 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에 대한 부실벌점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와 다른 법에서 규정한 불이익 부여시 적용할 수 있다.

나. 업체에 대한 부실벌점측정은 1995년 10월 1일 이후부터 실시하며, 건설기술자 등에 대한 부실벌점측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다. 부실벌점은 매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월이 경과한 날부터 6월간 적용한다.

라. 부실벌점을 불이익과 연계하여 적용하는

최초의 시기는 업체의 경우에는 1996년 9월1일, 건설기술자 등의 경우에는 1997년 9월1일로 한다.

마. 법 제21조의 5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부실벌점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바. 측정기관의 장은 부실측정시 벌점부과내역과 부실벌점 측정기준 및 경감기준을 벌점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경감기준에 따라 측정기관의 장이 경감하여야 한다.

□ 부실벌점의 측정기준 및 경감기준

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기준

1) 1급은 부실내용이 비교적 심하거나 부실개소수가 많은 경우로서 부실부위 및 위반정도에 따라 5점 내지 6점을 부과

2) 2급은 1급보다 부실정도가 비교적 덜한 경우로서 부실부위 및 위반정도에 따라 3점 내지 4점을 부과

3) 3급은 부실정도가 경미한 사항으로서 부실부위 및 위반정도에 따라 1점 내지 2점을 부과

번호	세 부 부 실 사 례	점 수
1.1	• 콘크리트면의 균열발생	1
	- 기둥·보·슬라브 등 주요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여 구조안전에 위험이 있을 때	
	- 구조안전에는 위험이 없으나 균열의 발전이 예상되어 보수보강이 필요할 때	
1.2	- 구조안전에 지장은 없으나 균열이 다수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할 때	2
	• 콘크리트 재료분리 발생	3

번호	세 부 부 실 사 례	점 수
1.3	- 주요구조부 철근의 노출 또는 재료분리가 직경 1m 이상 발생, 구조상 위험이 있을 때	1
	- 주요구조부 재료분리가 직경 1m 이상인 경우	2
	- 주요구조부 재료분리가 직경 0.5m 이상인 경우	3
1.4	• 배수상태 불량	2
	- 배수불량으로 구조물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 배수불량으로 구조물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경우	
1.5	•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1
	- 주요 방수구조물에서 전면보수를 요하는 경우	
	- 주요 방수구조물에서 방수면적의 1/2 이상 보수를 요하는 경우	
1.6	- 액체방수 등 간이보수를 요하는 경우	2
	• 건설공사 후 발생한 폐자재 처리상태 불량	3
	• 공사 뒷마무리·정리상태 불량	3
1.7	• 시공단계별로 감리원(감독)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	3
	- 지하매설물에 대한 검측 불철저로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 주요 구조부위 검측 불철저로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1.8	- 감리자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을 거부하여 감리(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때	1
	※ 건설기술관리법 제13조의 2 및 주택건설 촉진법 제7조 제1항 8호 나목 적용의 경우는 제외	2
	• 시공 상세도면 작성 소홀	
1.8	- 주요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을 소홀히 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사례 발생시	3

번호	세 부 부 실 사 례	점 수
1.9	완시공사례 발생시 - 기타 구조물에 대한 시공상제도 작성 부적정으로 보완시공 사례 발생시	3
	• 공정관리 소홀로 공정부진 - 감리(감독)으로부터 공정만회대책 요구를 받고 만회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3
1.10	• 공시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 - 환경오염등 인근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	1
	- 공시수행과정에서 토사유실, 침수 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2
1.11	• 공사중 부주의로 인한 민원발생 • 가설시설물(동바리, 비계, 거푸집 등) 설치상태 불량	3
	- 설치불량으로 안전사고 발생시 - 구조물이 허용치이상 변형되거나 보완되지 미이행	1 2
1.12	- 설치상태 불량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 각종 공사용 위험·안전표지판 설치 미흡	3 2
	- 설치미흡으로 안전사고 발생시 -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 3
1.13	• 현장 방재대책 소홀 - 방재소홀로 공중에 현저한 위험을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 방재대책 소홀로 민원 발생(단, 천재지변시 제외)	2
1.14	- 공사 착수전 방재·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소홀 •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미흡	3
	- 품질관리 계획 미수립 - 품질관리계획 수립상태 부적정 - 품질관리 실시 미흡	1 2 3
1.15	• 시험실 규모, 시험장비, 시험요	

번호	세 부 부 실 사 례	점 수
	원의 확보 미흡 - 시험장비 미설치 및 시험요원배치 소홀	1
	- 시험실 및 장비설치 및 시험요원자격 기준 미달	2
1.16	-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지하여 시험실시가 곤란하거나 규정에 의한 검사미필	3
	• 건설용 자재의 관리상태 불량	3
1.17	•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과정 불량 - 서중·한중 콘크리트 타설계획 미수립, 경화이전 거푸집 해체 등으로 구조물에 변형 발생시	1
	- 주요구조물용 콘크리트 배합설계 미실시 및 불량콘크리트 타설시	2
1.18	- 시공관리소홀 및 양생관리 미흡 • 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포함)의 현장관리상태 불량	3
	- 현장배합 미실시, 계량장치 미검정, 골재 규격별 분리저장 미실시, 자동기록 장치 미작동 및 기록지 미보관, 가스행위 등	1
1.19	- 골재관리 상태 미흡, 아스콘 생산온도 부적정 - 관리시험 부적정, 장비결합사항 미조치	2 3
	•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상태 불량 - 현장다짐밀도 및 포장두께 부족 이 허용치 초과시	1
1.20	- 침하, 균열 발생시 - 혼합물 온도관리 불철저	2 3
	•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 - 동일공사에서 동일사유로 시정명령을 2회 받은 경우	1
	- 동일공사에서 시정명령 2회 받은 경우 - 동일공사에서 시정명령 1회 받은 경우	2 3

번호	세 부 부 실 사 례	점 수
1.21	• 상기사항 외에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	1
	- 공중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 설계상 허용오차를 벗어나게 시공한 경우	
1.22	• 미관상 불량하게 시공된 경우	3
	• 기타 특정기관에서 부실이라고 판단한 사항	
	- 재시공	
	- 보완시공	2
	- 기타 경미한 과실이라고 판단되는 부실	3

나. 감리업체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기준

① 1급은 책임감리업무를 비교적 소홀하게 한 경우로서 부실부위 및 위반정도에 따라 5점 내지 6점을 부과

② 2급은 1급보다 부실정도가 비교적 덜한 경우로서 부실부위 및 위반정도에 따라 3점 내지 4점을 부과

③ 3급은 부실정도가 경미한 사항으로서 부실부위 및 위반정도에 따라 1점 또는 2점을 부과

번호	주요 부 실 사 례	적용등급
2.1	-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 불철저	1, 2, 3
2.2	- 공사의 시공단계별 구조물에 관한 검측·확인 불철저	1, 2, 3
2.3	- 시공상세도면 검토 불철저	2, 3
2.4	- 기상·예비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불철저	2, 3
2.5	- 시공자의 방재대책에 대한 확인 불철저	1, 2, 3
2.6	-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확인 불철저	1, 2, 3
2.7	-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불	2, 3

번호	주요 부 실 사 례	적용등급
2.8	철저 - 품질시험 계획수립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불철저	1, 2, 3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2.9	불철저 -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소홀 및	2, 3
	처리지연	
2.10	- 기록유지 및 보고 소홀	3
2.11	- 자격미달감리자의 배치 및 배치	1
2.12	인원 부족	
2.13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제출된	1
	감리원의 임의변경	
2.14	-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	1, 2, 3
2.15	- 상기 사항외에 감리업무 소홀로 부실공사 초래	1, 2, 3
2.16	- 기타 측정기관에서 부실이라고 판단한 사항	1, 2, 3

다.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 기준

① 1급은 설계용역 업무를 비교적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로서 부실부위 및 위반정도에 따라 5점 내지 6점을 부과

② 2급은 1급보다 부실정도가 비교적 덜한 경우로서 부실부위 및 위반정도에 따라 3점 내지 4점을 부과

③ 3급은 부실정도가 경미한 사항으로서 부실부위 및 위반정도에 따라 1점 또는 2점을 부과

번호	주요 부 실 사 례	적용등급
3.1	- 각종 현장조사 잘못으로 설계변경사유 발생	1, 2, 3
3.2	- 토질, 기초조사 잘못으로 설계 변경사유 발생	1, 2, 3

번호	주요 부실 사례	적용등급
3.3	- 현장측량을 잘못하여 설계변경 사유 발생	1, 2, 3
3.4	- 구조계산 잘못으로 구조물 보완 시공사례 발생	1, 2
3.5	- 수량산출 잘못	2, 3
3.6	- 구조물의 설계위치를 잘못으로 설계변경 사유 발생	1, 2, 3
3.7	- 설계도서 작성 소홀	1, 2, 3
3.8	- 자재선정 잘못으로 공사의 부실 초래	2, 3
3.9	-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	1, 2, 3
3.10	- 용역참여기술자의 업무범위기재 소홀	2, 3
3.11	- 상기 사항외에 설계업무 소홀로 공사의 부실 초래	1, 2, 3
3.12	- 기타 측정기관에서 부실이라고 판단한 사항	1, 2, 3

라. 건설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기준

① 1급은 부실내용이 비교적 심하거나, 부실 개소수가 많은 경우로서 부실부위 및 위반정도에 따라 5점 내지 6점을 부과

② 2급은 1급보다 부실정도가 비교적 덜한 경우로서 부실부위 및 위반정도에 따라 3점 내지 4점을 부과

③ 3급은 부실정도가 경미한 사항으로서 부실 부위 및 위반정도에 따라 1점 또는 2점을 부과

번호	세 부 부 실 사 례	적용등급
4.1	• 콘크리트면의 균열발생 - 기둥·보·슬라브 등 주요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여 구조안전에 위험이 있을 때	1
	- 구조안전에는 위험이 없으나 균열의 발전이 예상되어 보수보강이 필요할 때	2

번호	세 부 부 실 사 례	적용등급	
4.2	- 구조안전에 지장은 없으나 균열이 다수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할 때	3	
	• 콘크리트 재료분리 발생 - 주요구조부 철근의 노출 또는 재료분리가 직경 1m 이상 발생, 구조상 위험이 있을 때	1	
4.3	- 주요구조부 재료분리가 직경 1m 이상인 경우	2	
	- 주요구조부 재료분리가 직경 0.5m 이상인 경우	3	
4.4	• 배수상태 불량 - 배수불량으로 구조물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2	
	- 배수불량으로 구조물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경우	3	
4.5	•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 주요 방수구조물에서 전면보수를 요하는 경우	1	
	- 주요 방수구조물에서 방수면적의 1/2 이상 보수를 요하는 경우	2	
4.6	- 액체방수 등 간이보수를 요하는 경우	3	
	4.5	• 건설공사후 발생한 폐자재의 처리상태 불량	3
4.7	4.6	• 공사 뒷마무리, 정리상태 불량	3
	• 시공단계별로 감리원(감독)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 - 지하매설물에 대한 검측 불철저로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1	
4.7	- 주요구조부위 검측 불철저로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2	
	- 감리자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을 거부하여 감리(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때	3	

자 료 2

번호	세 부 부 실 사 례	적용등급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관리법 제13조의 2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제1항 8호 나목 적용의 경우는 제외 • 시공 상세도면 작성 소홀 - 주요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을 소홀히 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사례 발생시 - 기타 구조물에 대한 시공상세도 작성 부적정으로 보완시공 사례 발생시 	2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관리 소홀로 공정부진 - 감리(감독)으로부터 공정만회대책 요구를 받고 만회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3
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 - 환경오염 등 인근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 - 공사수행과정에서 토사유실, 침수 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 공사중 부주의로 인한 민원 발생 	1
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시설물(동바리, 비계, 거푸집 등) 설치 상태 불량 - 설치불량으로 안전사고 발생시 - 구조물이 허용치 이상 변형되거나 보완지시 미이행 - 설치상태 불량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공사용 위험·안전표지판 설치 미흡 - 설치미흡으로 안전사고 발생시 -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
4.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방재대책 소홀 - 방재소홀로 공중에 현저한 위험을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방재대책 소홀로 민원 발생(단, 	1

번호	세 부 부 실 사 례	적용등급
4.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재지변시 제외) - 공사 착수전 방재·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소홀 •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시 미흡 - 품질관리계획 미수립 - 품질관리계획 수립상태 부적정 - 품질관리 실시 미흡 	3
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실 규모, 시험장비, 시험요원의 확보 미흡 - 시험장비 미설치 및 시험요원 배치 소홀 - 시험실 및 장비설치 및 시험요원자격 기준 미달 -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하여 시험실시가 곤란하거나 규정에 의한 검사미필 	1
4.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용 자재의 관리상태 불량 	3
4.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과정 불량 - 서중·한중 콘크리트 타설계획 미수립, 경화이전 거푸집 해체 등으로 구조물에 변형발생시 - 주요구조물용 콘크리트 배합설계 미실시 및 불량콘크리트 타설시 - 시공관리소홀 및 양생관리 미흡 	2
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포함)의 현장관리 상태 불량 - 현장배합 미실시, 계량장치 미검정, 골재 규격별 분리저장 미실시, 자동기록장치 미작동 및 기록지 미보관, 가수행위 - 골재관리 상태 미흡, 아스콘 생산온도 부적정 - 관리시험 부적정, 장비결합사항 미조치 	3
4.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상태 불량 	2

번호	주요부실사례	적용등급
4.20	- 현장다짐밀도 및 포장두께 부족 이 허용치 초과시	1
	- 침하, 균열 발생시	2
	- 혼합물 온도관리 불철저	3
	• 시정명령 등을 받는 경우	
	- 동일공사에서 동일사유로 시정 명령을 2회 받은 경우	1
	- 동일공사에서 시정명령 2회 받 은 경우	2
4.21	- 동일공사에서 시정명령 1회 받 은 경우	3
	• 상기 사항외에 설계도면과 상이 하게 시공	
	- 공중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1
4.22	- 설계상 허용오차를 벗어나게 시 공한 경우	2
	- 미관상 불량하게 시공된 경우	3
	• 기타 측정기관에서 부실이라고 판단한 사항	
	- 재시공	1
	- 보완시공	2
	- 기타 경미한 과실이라고 판단되 는 부실	3

마.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기준

① 1급은 설계용역 업무를 비교적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로서 부실부위 및 위반정도에 따라 5점 내지 6점을 부과

② 2급은 1급보다 부실정도가 비교적 덜한 경우로서 부실부위 및 위반정도에 따라 3점 내지 4점을 부과

③ 3급은 부실정도가 경미한 사항으로서 부실부위 및 위반정도에 따라 1점 또는 2점을 부과

번호	주요부실사례	적용등급
5.1	- 각종 현장조사 잘못으로 설계변 경사유 발생	1, 2, 3
5.2	- 토질·기초조사 잘못으로 설계 변경사유 발생	1, 2, 3
5.3	- 현장측량을 잘못하여 설계변경 사유 발생	1, 2, 3
5.4	- 구조계산 잘못으로 구조물보완 시공사례	1, 2
5.5	- 수량산출 잘못	2, 3
5.6	- 구조물의 설계위치 잘못으로 설 계변경사유 발생	1, 2, 3
5.7	- 설계도서 작성 소홀	1, 2, 3
5.8	- 자재선정 잘못으로 공사의 부실 초래	2, 3
5.9	- 시정명령 등을 받는 경우	1, 2, 3
5.10	- 용역참여기술자의 업무범위 기 재 소홀	2, 3
5.11	- 기타 설계업무소홀로 공사의 부 실 초래	1, 2, 3
5.12	- 측정기관에서 부실이라고 판단 한 사항	1, 2, 3

바. 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기준

① 1급은 책임감리업무를 비교적 소홀하게 한 경우로서 부실부위 및 위반정도에 따라 5점 내지 6점을 부과

② 2급은 1급보다 부실정도가 비교적 덜한 경우로서 부실부위 및 위반정도에 따라 3점 내지 4점을 부과

③ 3급은 부실정도가 경미한 사항으로서 부실부위 및 위반정도에 따라 1점 또는 2점을 부과

번호	주요부실사례	적용등급
6.1	-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었는 지 확인 불철저	1, 2, 3

번호	주요 부실 사례	적용등급
6.2	- 공사의 시공단계별 구조물에 관한 검측·확인 불철저	1, 2, 3
6.3	- 시공상세도면 검토 불철저	2, 3
6.4	- 기성검사·예비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불철저	2, 3
6.5	- 방재대체에 대한 확인 불철저	1, 2, 3
6.6	-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확인 불철저	1, 2, 3
6.7	-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불철저	2, 3
6.8	-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불철저	1, 2, 3
6.9	- 사용자제의 적합성 검토·확인 불철저	1, 2, 3
6.10	-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소홀 및 처리지연	2, 3
6.11	- 기록유지 및 보고 소홀	3
6.12	-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	1, 2, 3
6.13	- 기타 감리업무소홀로 공사의 부실 초래	1, 2, 3
6.14	- 측정기관에서 부실이라고 판단한 사항	1, 2, 3

사. 부실벌점 경감기준

① 시공능력평가 및 우수업체에 대한 부실벌점의 경감은 1년간 해당업체에 적용하며, 표창의 경우에는 1회만 적용한다.

② 7.1부터 7.4까지 사례는 당해현장에 대하여 경감적용하며 7.5부터 7.7까지 사례는 부실벌점을 부과한 측정기관이 집계한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적용하며 7.8 사례는 최종집계한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한다.

③ 8.1 사례는 당해현장에 대하여 경감적용하고 8.2 사례는 부실벌점을 측정한 기관이 집계한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하며 8.3 부실사례는 최종집계한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한다.

④ 9.1 사례는 당해용역에 대하여 경감적용하고 9.2부터 9.3까지 사례는 부실벌점을 측정한 기관이 집계한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하고 9.4 부실사례는 최종집계한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한다.

번호	주요 경감 사례	적용등급
7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7.1	· 최신공법의 적용	3
7.2	· 구조물에 대한 최신기법 계측관리 철저	1
7.3	· 최신 공사관리기법 적용	1
7.4	· 매물부분 및 완성구조물 검측 등 기록 철저(사진 등)	1
7.5	· 시공능력평가결과 당해업체의 평균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	2
7.6	· 우수건설업체로 선정된 경우	5
7.7	·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표창을 받은 경우	3
7.8	·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7.5, 7.6, 7.7 사례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3
8	○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	
8.1	· 최신관리기법	2
8.2	·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표창을 받은 경우	3
8.3	·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3
9	○ 설계 등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	
9.1	· 최신공법의 적용(당해 용역에만 적용)	3
9.2	· 설계용역평가결과 우수한 업체	3
9.3	·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표창을 받은 경우	3
9.4	·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표창을 받은 경우 ※ 9.2 사례는 참여기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3